

##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내 「국제산업물류단지(송정북측) 지구」 일원에 신설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1. 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



기준점		지적위성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의 재질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m)	Y(m)					
지적 삼각 보조점	보181	35°06'48.48514"	128°50'59.22814"	동부	179383.89	186247.03	5.86	강서구 송정동 1378	2013.10.24	철재	지역좌표계
		35°06'48.47550"	128°50'59.20700"		279693.245	186305.617					세계좌표계
	보182	35°06'38.62335"	128°51'26.82046"	동부	179078.93	186945.30	69.43	강서구 송정동 산84-4	2013.10.24	철재	지역좌표계
		35°06'38.61371"	128°51'26.79932"		279388.303	187003.897					세계좌표계

-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 보관 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
- 지적기준점은 토지경계 분쟁 방지와 그 해결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각종시설 등의 공사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재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행정과(☎ 051-979-5104)에 문의바랍니다.